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변경(안 제2조, 제5조, 제7조, 안 별지 제2호서식)
 - (현행) :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나. 자치법규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칭 수정(안 제12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를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 가목”을 “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으로 한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대하여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실시공을”을 “부실공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를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모사전송(팩스)”을 “팩스 송부”로 한다.

제12조 중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 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 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 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 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 리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 한다.	2. -----이란 「건설기술 진 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 ----- ----- -----.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10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 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 호 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	4. -----이란 영 별표 8 제 5호가목----- ----- --.

다.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
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의4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
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
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 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
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

----- 대
하여 법 제53조-----
-----.

② -----

----- 부실공사를 -----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 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u>모사전송(팩스)</u>,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 ----- <u>팩스 송부</u>----- ----- -----.
③ (생략)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 ----- ----- ----- <u>따</u> 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 <u>2조</u>-----.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u>별지 제2호 서식</u>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 ----- ----- ----- <u>별지</u> <u>제2호서식</u>----- -----.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 11. (생략)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

의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

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

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⑦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별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 4. (생략)

5. 별점의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들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들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나)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2 또는 3 1 또는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	2 또는 3 1 또는 2

	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 다. (생략)

6. (생략)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권 영 복
	담 당	이 상 우
	담 당 자	김 한 수 (480-6085)